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21772 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시
	소송대리인 D, E, F, G, H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I가 2023.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2037호로 공탁한 금 71,491,7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2023.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2037호로 공탁한 금 71,491,7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시,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소외회사가 2023.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2037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금 71,491,7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시,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한다.

나. 관련법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피고 ○○시, 대한민국의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자가 임차인인 피고 C인지, 채권양수인인 원고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C 또는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탁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김포시,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의 청구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청 구 원 인

1. 채권양도.양수 및 채권압류통지

임대인 주식회사 I (이하 '제3채무자'라 칭합니다.) 임차인 C ,계약일 2018.11.27. , 계약기간 8년으로 ○○도 ○○시 J K 호(이하 '목적물'이라 칭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원고와 피고 C 은 위 목적물의 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2020.12.21. 금80,000,000원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 ○○시는 체납액 금28,039,340원으로 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22.7.4.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고(갑 제3호증 ○○시 채권압류통지서),

피고 ○○○세무서는 체납액 금459,877,210원으로 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23.6.23.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세무서 채권압류통지서)

2. 채권양도통지

원고와 피고는 2020.12.21.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인 피고 C 이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위임을 하여 원고는 같은날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우리 대법원은 2003 다 43490호 판결에서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고 판시한바 유효한 양도통지를 하였고, 제3채무자에게 2020.12.22. 도달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와의 선후관계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대법원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다57213 판결에서는 한편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4.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일이 가장 빠른 원고에게 채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채권압류통지와 ○○○세무서의 압류통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2037호 공탁금액 금71,491,780원 피공탁자 원고와 피고 C 으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 합쳐진 혼합공탁(이하 '혼합공탁'이라 칭합니다.)을 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공탁서)

5. 확인의 이익

원고는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원고로서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